제주 휴온 아델리브 더 테라스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관련 안내 사항 – "제주 휴온 아델리브 더 테라스"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방문 시 사전 예약하신 분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하고 홈페이지를 운영(http://www.휴온아델리브.com)할 예정입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당첨(예비입주자 포함)자에게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사전 방문예약제 실시)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 휴온 아델리브 더 테라스"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1533-2116)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 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 04. 26.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제주도 서귀포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 26.) 현재 제주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1년 이상 거주자(2021.04.26. 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단, 90일 미만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8호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단신부임)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단독세대 또는 동거인(형제 · 자매, 친구 등)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불인정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 · 모, 장인 · 장모, 시부 · 시모, 조부 · 조모, 외조부 ·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 딸, 사위 · 며느리, 손자 · 손녀, 외손자 ·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 · 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 · 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특별공급(다자녀)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소득기준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 방식은 기준(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에서 주거 전용 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 · 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O	O	X	X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모두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 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시행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휴온아델리브.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 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시(30일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제101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 아파트의 견본주택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866-1번지에 설치되며, 홈페이지(http://www.휴온아델리브.com)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다자녀)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2. 05. 02(월)	2022. 05. 03(화)	2022. 05. 04(수)	2022. 05. 11(수)	2022. 05. 14(토)~16(월)	2022. 05. 22(일)~23(월)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10:00 ~ 17:00)	견본주택 (10:00 ~ 17:00)
장 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제주 휴온 아델리브 견본주택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866-1번지)	제주 휴온 아델리브 견본주택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866-1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11.16.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시 건축과 – 27295호(2022. 4. 2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시행위탁자 : 휴온인베스트먼트(주) / 시행수탁자 : 교보자산신탁(주) / 시공사 : 대창기업(주)
■ 공급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863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최고 4층 6개동, 총 68세대(특별공급 다자녀 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준공시기 : 2023년 07월 예정 (단, 신탁업자가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책임준공 의무 이행 시 2024년 01월 예정)
■ 입주시기 : 2023년 08월 예정 (단, 신탁업자가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책임준공 의무 이행 시 2024년 02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세대별대지지분	총공급세대수	일반공급세대수	특별공급(다자녀)세대수	최하층우선배정세대수
민영	2022000252	1	98.9637	98	98.9637	38.7961	137.7598	81.0563	218.8162	175.8751	1	1	–	–
		2	99.0950A	99A	99.0950	37.6431	136.7381	81.1639	217.9019	176.1084	8	8	–	–
		3	99.0887B	99B	99.0887	36.6931	135.7818	81.1587	216.9405	176.0972	24	22	2	–
		4	99.0950C	99C	99.0950	37.1430	136.2380	81.1639	217.4018	176.1084	4	4	–	–
		5	99.0887D	99D	99.0887	36.1859	135.2746	81.1587	216.4333	176.0972	12	11	1	–
		6	99.6806E	99E	99.6806	36.5128	136.1934	81.6435	217.8369	177.1491	4	4	–	–
		7	99.9561F	99F	99.9561	35.7805	135.7366	81.8692	217.6057	177.6387	12	11	1	–
		8	99.0457G	99G	99.0457	38.1644	137.2101	81.1235	218.3335	176.0208	3	3	–	–
	합 계										68	64	4	0

• 대지지분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계약 면적과 등기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 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음.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0.3025 또는 ㎡÷3.3058)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주택형별로 공급 물량이 있는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공급 물량이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팸플릿 등으로 대상 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고 합산 면적의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인허가 변경 또는 필지 합병 및 분할, 확정측량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홍보 제작물 및 입주자모집공고의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제주 휴온 아델리브' 견본주택(1533-2116)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할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 가능함.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분양(전매)계약서에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으면 납부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100%, 6개월 이내 200%, 6개월 초과 300%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람.

■ 주택형 약식표기 안내 (단위 : ㎡)

주택형(㎡)	98.9637	99.0950A	99.0887B	99.0950C	99.0887D	99.6806E	99.9561F	99.0457G
약식표기 주택형	98	99A	99B	99C	99D	99E	99F	99G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천원, 세대, 주택형99㎡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약식표기)	동(라인)	세대수	층구분	해당세대수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발코니확장공급가	발코니확장부가세	계	계약금(10%) 1회 계약시	2회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중도금(60%) 1회(10%) 2022.07.29	2회(10%) 2022.09.30	3회(10%) 2022.11.30	4회(10%) 2023.01.31	5회(10%) 2023.03.31	6회(10%) 2023.05.31	잔금(30%) 입주지정일
99A	101,102,103,104 (1,4호라인)	8	1층	8	272,430	729,970	6,000	600	1,009,000	50,450	50,450	100,900	100,900	100,900	100,900	100,900	100,900	302,700
99B	101,102,103,104 (1,4호라인)	24	2층	8	263,250	705,150	6,000	600	975,000	48,750	48,750	97,500	97,500	97,500	97,500	97,500	97,500	292,500
			3층	8	268,380	719,020	6,000	600	994,000	49,700	49,700	99,400	99,400	99,400	99,400	99,400	99,400	298,200
			4층	8	286,740	768,660	6,000	600	1,062,000	53,100	53,100	106,200	106,200	106,200	106,200	106,200	106,200	318,600
99C	101,102,103,104 (2,3호라인)	4	1층	4	278,100	718,300	6,000	600	1,003,000	50,150	50,150	100,300	100,300	100,300	100,300	100,300	100,300	300,900
99D	101,102,103,104 (2,3호라인)	12	2층	4	261,900	701,500	6,000	600	970,000	48,500	48,500	97,000	97,000	97,000	97,000	97,000	97,000	291,000
			3층	4	267,030	715,370	6,000	600	989,000	49,450	49,450	98,900	98,900	98,900	98,900	98,900	98,900	296,700
			4층	4	285,390	765,010	6,000	600	1,057,000	52,850	52,850	105,700	105,700	105,700	105,700	105,700	105,700	317,100
99E	105,106 (1,2호라인)	4	1층	4	270,540	724,860	6,000	600	1,002,000	50,100	50,100	100,200	100,200	100,200	100,200	100,200	100,200	300,600
99F	105,106 (1,2호라인)	12	2층	4	261,630	700,770	6,000	600	969,000	48,450	48,450	96,900	96,900	96,900	96,900	96,900	96,900	290,700
			3층	4	266,760	714,640	6,000	600	988,000	49,400	49,400	98,800	98,800	98,800	98,800	98,800	98,800	296,400
			4층	4	285,120	764,280	6,000	600	1,056,000	52,800	52,800	105,600	105,600	105,600	105,600	105,600	105,600	316,800
98	104(3호라인)	1	1층	1	282,150	756,250	6,000	600	1,045,000	52,250	52,250	104,500	104,500	104,500	104,500	104,500	104,500	313,500
99G	104(3호라인)	3	2층	1	272,430	729,970	6,000	600	1,009,000	50,450	50,450	100,900	100,900	100,900	100,900	100,900	100,900	302,700
			3층	1	278,370	746,030	6,000	600	1,031,000	51,550	51,550	103,100	103,100	103,100	103,100	103,100	103,100	309,300
			4층	1	296,460	794,940	6,000	600	1,098,000	54,900	54,900	109,800	109,800	109,800	109,800	109,800	109,800	329,400

■ 공통 유의사항

>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 각 주택형의 세대별 1차 계약금 납입 이후 2차 계약금 납부일은 계약체결 이후 30일 이내 사업주체에서 정하는 일자에 납부하여야 함.
> • 주택공급 신청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공급면적(㎡) 또는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 본 공동주택은 비수도권 읍면지역 전용면적100㎡ 이하의 국민주택규모로 부가세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 상기 공급금액은 공급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 동, 층, 향, 일조, 조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택형별, 층별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 등이 미포함 되어 있음.
>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인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비용이 미포함 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함.
> • 상기 세대별 계약 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홀 등 주거 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고 면적 계산상 소수점[셋째자리에서] 단수 조정 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 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설계 변경 등 인허가 변경, 측량 및 지적 정리 등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등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 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 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 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 잔금은 사용 검사일 이후 납부하되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득하고 입주할 경우,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여야 하고, 10%금액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가 가능하되, 이 경우의 구체적인 납부사항은 공급계약서에 따라 정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 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키 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 전에 완납하여야 함.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지연이자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 됨)
> •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 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시행위탁자 및 시공회사가 지정하는 중도금 대출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 및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으로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시 지연이자 부과됨)
> • 계약자는 계약금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대출 취급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자는
> 공급대금[미납대금, 지연이자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함)
> • 본 주택에 대한 청약 신청 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음.
>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서류는 서류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당첨자 효력 상실, 그에 따른 공급계약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사본 불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함.
>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신청자 및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 점검토록 할 예정임.
>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에 명기된 할인율(선납 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선납 금액 중 약정별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는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음.(중도금 및 약정일 이전에 납부한 선납금액은 환불 불가)
>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
> •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주체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임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99B	99D	99F	합 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	1	1	4
합 계	2	1	1	4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상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후 남은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유의사항

>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 접수가 가능함.
>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청약 시 둘 다 무효 처리함.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 청약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며 국토교통부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 •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 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등)에는 계약
>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름.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1회 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 ·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사전청약 포함)제한]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소형 ·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여 청약신청 하시기 바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모든면적 / 5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소형 ·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제주특별자치도 1년이상 거주)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비 고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 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 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해당 시 · 도 거주 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제주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 도로 본다.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2.4.26.)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자가 1년미만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거주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 · 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함
–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 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추가 접수 불가)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한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어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구분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85㎡초과	· 100% 추첨제 적용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모집공고 전일까지 예금으로 전환, 청약예금의 조건을 충족한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총 납입금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 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액 기준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제주특별자치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개정 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9. 소형 · 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 · 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 •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제주특별자치도 1년이상거주) 거주신청자가 기타지역(제주특별자치도 1년미만거주)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추첨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합니다. (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 · 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 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4.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다자녀	2022. 05. 02(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일반공급	1순위	2022. 05. 03(화)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2. 05. 04(수)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특별공급의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 ·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 당첨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 · 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5.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다자녀	• 일시: 2022. 05. 11 (당첨자 발표)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일반공급	1순위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2순위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 · 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 · 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시행위탁자 홈페이지(http://www.sacheon-elcru.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 05. 11(수)~2022. 05. 20(금)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를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 05. 11(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6. 자격검증 서류제출 및 계약 체결 일정

■ 계약체결 전 서류 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계약 시 아래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개정 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선정 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 상기 기간 내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취소 등) 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정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적격검수,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안내

구분	자격서류제출	계약체결
일시	2022. 05. 14~16	2022. 05. 22~23
장소	제주 휴온 아델리브 더 테라스 견본주택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866-1번지)	
대상자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당첨자
유의사항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당첨자 적격검수 제출 일정 기간 내 감염증 예방관리 수칙의 정부 시책에 따라 방문예약제로 운영하오니 견본주택 대표번호(1533-2116)로 사전방문예약 신청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까지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여야 함.
※ 견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자(특별공급 신청자 중 장애인 및 65세이상 고령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 가능)는 청약신청 시에 제출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발표일 이후 자격서류제출 기간 내 서류 제출하여야 함.

■ 특별공급 자격검증 구비서류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	○		특별공급신청서/확약서/무주택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인터넷 청약(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특별공급신청자)무주택서약서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인터넷 청약, 청약홈(apply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 본 견본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		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본인발급용 필수)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이 안될 경우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사실증명원		· 국내거주기간 확인,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 초과)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 기록대조일 : 출생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6.)로 지정하여 발급
		○	단신부임 입증서류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90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	복무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6.)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등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 · 비속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직계 존 · 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비속은 만30세 이상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직계비속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	[청약자 단신부임 제외사항]: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 체류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6.)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본인	· 당사 견본주택 비치,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한부모가족증명서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본에 등재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 및 재혼 가정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자녀가 입양인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임신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임신진단서, 출산이행확인각서는 견본주택 비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인감증명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생략
	○		신분증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 서명 또는 날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상기 모든 증명 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이 필요합니다.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일반공급 자격검증 구비서류(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구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공통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O		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본인발급용 필수)
	O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O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2.04.26.)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 초과)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O	단신부임 입증서류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90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O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O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
일반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 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 청약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2.04.26.)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단,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이상 부양)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 및 청약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2.04.26.)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및 청약자가 단신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2.04.26.)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O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소형 · 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본인 계약 시	O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O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본인 발급용)
	O		인감도장		
		O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제외
		O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이외)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O		주민등록증, 인장	대리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 · 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정당 당첨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1년, 수도권외의 지역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2018.05.04.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 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됨
•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주변도로의 비산분진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적격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제58조 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3항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1005-604-268231	교보자산신탁(주)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시행위탁자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무통장 입금 시 동 · 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예시: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1020201홍길동)
• 지정된 분양대금(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분양대금 지정된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시행위탁자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사전점검 진행절차는 추후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준공예정월 : 2023년 07월 예정 (단, 신탁업자가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책임준공 의무 이행 시 2024년 01월 예정)
■ 입주예정월 : 2023년 08월 예정 (단, 신탁업자가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책임준공 의무 이행 시 2024년 02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예정임)
■ 입주예정월 : 2023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환경보전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입주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선납할인 및 연체 안내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 부대복리시설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입주 후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세대내부에 부분적으로 도배가 진행될 경우 시공시차에 따른 도배지의 색상, 질감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할 예정입니다.

7. 선택품목(유상) 계약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1)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옵션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40%) 지정일	잔 금(50%) 입주지정일	비고
침실 2, 3 전타입 공통	삼성 시스템 에어컨 – 제습기 포함	4,875,000	487,500	1,950,000	2,437,500	
침실 2, 3 전타입 공통	삼성 시스템 에어컨 – 제습기 미포함	3,823,000	382,300	1,529,200	1,911,500	

• 시스템 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 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 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 설치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면 및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함. (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시스템에어컨 선택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에 귀속되며, 원상회복 또는 변경 공사를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노출 시공됨.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는 해당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시행위탁자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계약 체결 시 설치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견본주택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냉난방용 시설물이며,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입니다. 난방기능이 없습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단 배치하는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설치는 권장하지 않으며 개별설치로 인한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가구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옵션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40%) 지정일	잔 금(50%) 입주지정일	비고
침실 3 전타입 공통	붙박이장	1,815,000	181,500	726,000	907,500	

3) 가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옵션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60%) 지정일	잔 금(30%) 입주지정일	비고
주방가전	밀레 식기 세척기	8,040,000	804,000	3,216,000	4,020,000	
전타입 공통	밀레 인덕션4구(후드결합)					
	밀레 빌트인 오븐	8,070,000	807,000	3,228,000	4,035,000	
	밀레 와인 냉장고					
	밀레 빌트인 냉장고	8,460,000	846,000	3,384,000	4,230,000	
	밀레 빌트인 냉동고					

4) 아트월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옵션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40%) 지정일	잔 금(50%) 입주지정일	비고
주방 아트월 A,B,C,D타입	지정 타일 400*800	1,436,000	143,600	574,400	718,000	
주방 아트월 E,F타입		1,150,000	115,000	460,000	575,000	

5) 거실, 방, 주방 바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옵션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40%) 지정일	잔 금(50%) 입주지정일	비고
마루, 타일 A,B,C,D타입	거실, 방 원목마루 주방 바닥 지정 타일 600*600	11,530,000	1,153,000	4,612,000	5,765,000	지복득 원목마루
마루, 타일 E,F타입		11,940,000	1,194,000	4,776,000	5,970,000	
마루, 타일 98,G타입		12,160,000	1,216,000	4,864,000	6,080,000	

6) 주방, 보조주방, 펜트리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옵션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60%) 지정일	잔 금(30%) 입주지정일	비고
주방 보조주방 펜트리 가구 A,B,C,D타입	주방 세라믹 상판 / FENIX 마감	62,400,000	6,240,000	37,440,000	18,720,000	이태리제품
	싱크볼(알토) / 수전(파포니 라이트)					
	아일랜드 / BAR TOP / 싱크볼(소)					
	펜트리 키큰장 / 월컴장					지정 호마이카 마감
	보조주방 상, 하부장 / MMA 상판	3,450,000	345,000	2,070,000	1,035,000	
	보조주방 키큰수납장					
주방 보조주방 펜트리 가구 E,F타입	주방 세라믹 상판 / FENIX 마감	63,750,000	6,375,000	38,250,000	19,125,000	이태리제품
	싱크볼(알토) / 수전(파포니 라이트)					
	아일랜드 / BAR TOP / 싱크볼(소)					
	펜트리 키큰장 / 월컴장					지정 호마이카 마감
	보조주방 상, 하부장 / MMA 상판	3,550,000	355,000	2,130,000	1,065,000	
	보조주방 수전, 싱크볼 / 키큰수납장					
주방 보조주방 펜트리 가구 98,G타입	주방 세라믹 상판 / FENIX 마감	60,640,000	6,064,000	36,384,000	18,192,000	이태리 제품
	싱크볼(알토) / 수전(파포니 라이트)					
	아일랜드 / BAR TOP / 싱크볼(소)					
	펜트리 키큰장 / 월컴장					지정 호마이카 마감

7) 거실 간접조명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옵션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40%) 지정일	잔 금(50%) 입주지정일	비고
간접조명 A,B,C,D타입	직부, 간접 LED 등	2,735,000	273,500	1,094,000	1,367,500	소룩스 직부 간접등 제품
간접조명 E,F타입	간접 T5 등	2,128,000	212,800	851,200	1,064,000	
간접조명 98,G타입	직부, 간접 LED 등	2,516,000	251,600	1,006,400	1,258,000	소룩스 직부 간접등 제품

■ 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004-279240	교보자산신탁(주)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 시 동 · 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예시: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1020201홍길동)
• 상기 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관련 유의사항
• 추가선택 옵션품목은 시행수탁자 교보자산신탁(주) 및 시공사 대창기업(주)와는 무관하며, 시행위탁자 (주)휴온인베스트먼트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 · 공급하는 사항임.(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 사항임.)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시행위탁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공고의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공사를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해당 공사 착수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 시공상의 문제로 시행위탁자는 계약체결 일정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함.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플러스옵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 시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및 빌트인 가구 매립 시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빌트인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시행위탁자)에 귀속됨.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옵션 상품을 설치하는 시점 또는 수분양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는 시점)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8. 유의사항

※ 청약신청 및 공급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통사항

구분	내용
공급계약	● 본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거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탈로그 등 홍보물에 사용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컷, 단위세대는 2022년 03월18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카탈로그 등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지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탈로그 등 홍보물은 광고 · 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구역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보행자 도로 및 토지계획이용계획도의 개발계획 등은 관련주체 소관으로 시행위탁자와 무관합니다. ● 시설물, 외관, 색채 창호 조경계획등은 위치 및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옥상, 옥탑부위 의 외부공조시설 및 반사경 등은 표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내용상에 기재된 교통, 학교 개설 및 배정 등은 인허가관청 등 관계기관이 주관하는 것으로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시행위탁자와 무관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타입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타입별 공급금액이 상이하므로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서귀포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공급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기관에 관련 내용으로 정보 제공 시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의 판매 시점 등 사업주체 여건에 따라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서귀포시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사업관계자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 계획변경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변경 인 · 허가를 진행하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위탁자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당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등은 아파트 준공 전 공사용 운행 등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또는 원인 제공자(파손자) 책임 하에 있으며 시공사에 하자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입주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이사 하셔야 합니다. ● 입주시 단지내 비상차량 도로를 활용 할 수 있으나 입주시 동시 입주 등으로 혼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 또는 사업주체가 통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만한 입주를 위해 도로는 일방통행 등으로 통제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통보하기로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 주요 내용을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 과정상 경미한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지는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개발 사업계획변경, 토지단위계획변경 등으로 토지 이용계획 및 지구 내 타 토지의 용도, 위치,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으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 귀책 사유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시행위탁자와 무관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환경보전,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 선택품목(유상),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니,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시에는 계약을 체결한 품목 외에 전시품 등은 시공 ·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 등) 등은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므로 문의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는 관련 도서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달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차 · 보도 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향후 지적공부 정리절차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공급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잔금납부시 상호정산하기로 합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본 사업지는 여건에 따라 토지등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하며,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등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하며, 개인사정에 따라 대출취급 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시행위탁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 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사와 분양 상담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 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책임을 요구할 수 없음을 반드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서귀포시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미제출과 같이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지의 행정구역 및 명칭, 동 · 호수 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문주, 동 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고,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위한 동 · 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은 분양가와 별도로 시행위탁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가 선택품목(유상)은 설치내용 및 금액에 대하여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별도 추가 선택품목(유상)은 분양대상물건의 부수 계약사항으로 분양대금과 더불어 취득가액으로 산정되어 취득세 부과 기준금액이 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구획을 지정/분할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관리사무실,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 · 외부 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에 한하여 시공 및 제공되며, 그 외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일 이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규제내용이 변경되어 이를 준수하고자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 동질 및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및 시공범위는 타입별로 차이가 있사오니 반드시 계약체결 전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주택형 및 세대별 단지배치 및 개인 취향에 따라 마감재변경(색상 등 포함), 위치변경(거실 위치 등)은 불가하오니 견본주택 및 도면 상 내용 및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품목(유상) 등을 모두 설치한 세대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며, 설치 및 시공내용,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등 전기배선관련 제품과 월패드, 주방TV 등 홈네트워크 관련제품사양 및 온도조절기 제품사양 및 위치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는 도면, 단위세대 모형과 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 세대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의 견본주택 설치주택형과 상이함을 유의하여 계약을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동 · 호수 당첨 시 동일한 타입 평면이라도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세대내부 배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사항은 대관협의 및 공사 중 발생하는 각종 사유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계약 전 인지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 단지 내 시설물(난간,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아파트 단지명 및 동표시 등 각종 외벽 부착 사인물) 및 옥상 조형물, 색채, 저층 색채 등 2. 조경시설물과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위치 등 3. 기타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고유한 자산으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저하가 아닌 경우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적용 시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소명이 부족할 경우 계약은 취소됩니다. 이 경우 납입한 분양대금은 환불이 가능하나, 별도의 환불에 대한 기간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일반사항	●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카다로그 등) 및 분양 홈페이지상에 표시된 조감도, 투시도, 각종 이미지,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계획,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주변현황, 부지의 고저차 등), 공급가격, 기타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일러스트(그림)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제작물은 광고 · 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으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으로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법 제9조의 2 및 시행령 제5조,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으며, 아파트 지하 피트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 · 허가	● 홍보물은 2022년 3월 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본 아파트에는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 ● 각종 광고 홍보물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서귀포시,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현장여건, 구조, 성능, 상품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건축법」,「주택법」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사업주체가 변경 인 · 허가를 진행하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이에 관련한 도서의 내용 중 단순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인허가 관청에서 본 아파트단지의 건설사업에 관하여 실시한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사항과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설계변경(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 포함)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단지 외부여건	●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지 인근 민가, 가설건축물, 농장등 이 있어, 이로 인한 조망, 생활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학교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학생통학 편의지원은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통학차량을 제공하고,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될 경우 승계하여 입주민 대표회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 입주 후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설계관련 주요 고지사항

구분		내용
단지	동별현황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 및 사생활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단지 내 시설물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달라 상이할 수 있으며,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 형태와 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합니다. ●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일부동의 경우 주행 차량과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계획	● 단지 외곽부에 면한 경사면 처리는 상세설계 진행에 따라 구조 및 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곽부에는 보행 안전을 위하여 난간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외장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 · 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외관디자인(마감재 패턴, 색채 및 사인물, 창호 색상 및 형태, 계단실 창호, 난간 형태 및 색상, 지붕 및 옥상구조물 형태 및 색채 등), 주차장 외벽과 옹벽의 형태, 색상 및 패턴, 외부계단과 문주의 위치 및 형태, 보도 포장 및 형태 등이 실시설계 및 공사 시 시공사 특화디자인 및 경관디자인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동 외부 색채계획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본 공사 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외부 공간에 조성되는 수목의 종류, 수량 및 위치, 외부 시설물의 종류, 형태 및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각종 홍보물 이미지는 축소 제작되는 한계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색채, 패턴, 마감재질, 크기, 조경(수목의 종류, 위치 및 수량, 휴게시설, 파고라, 수경시설 등) 및 각종 시설물(문주, 기계 및 전기관련실 급배기구, 외부 계단실 등)의 내용이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형태와 위치는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커뮤니티시설,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대지 주위 도로폭, 도로선형, 조경 및 토목 시설물의 위치, 인접도로와의 레벨차, 옹벽의 높이 및 형태, 공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외벽마감은 석재/석재뿜칠/수성페인트가 혼용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적용비율 및 석종은 변경될수 있고, 각 동별로 상이할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석재/석재뿜칠/알루미늄시트/수성페인트의 혼용으로 마감되며, 석재뿜칠, 수성페인트의 적용범위는 현장 여건에 의해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현장여건 및 인테리어설계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배치 변경 될 수 있으며,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 · 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 · 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로,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온실, 조경시설 주민운동시설 및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차량 소음 및 불빛, 분진에 의한 생활권 등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진동,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콘크리트 및 난간턱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해 생활권과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옹벽 등 단차구간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추후 인허가 관청의 의견, 미관 디자인,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2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며, 위치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4/5 이상의 동의를 받는 사항 외의 사업계획의 변경 및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변경처리 후 사업계획승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완료 후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파일 및 기초형식 등은 굴토 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모형에 표현된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의 휀룸, 실외기실, 배기탑 및 환기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는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는 지자체 조례와 사용성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실시설계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 지하층에 팬룸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이 세대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온실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CI 및 BI 등의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엘리베이터 홀(채광 유무 포함) 등 공용부분은 공간 크기 및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크기, 색채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창, 공용부 창의 열림 방향, 크기 및 위치(자동폐쇄장치 설치 포함), 공용부 창호 프레임의 사양,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저층부의 석재마감 줄눈의 간격은 디자인 및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차장 및 지하층 피트층과 면한 부위는 석재뿜칠 또는 수성페인트 마감이 적용됩니다. ● 우편물 보관함 및 무인택배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1층 및 지하1층 로비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입면형태(옥상 조형물, 측벽문양, 저층부 석재, 동 출입구, 옹벽), 재질 및 색채 등은 구조내력확보, 미관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됩니다. ● TV 공청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방재실과 가깝고 전파수신이 양호한 아파트 지붕(옥상)에 설치됩니다. ● 지하층 내 유지 · 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 시공됩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전기요금이 상승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경 식재계획으로 인하여 일부세대의 조망이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방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 · 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일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며 저층세대의 경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조경계획은 사업계획변경승인 시의 도서내용을 충족하여 식재하되 그 식재위치는 식재의 생육환경과 형태, 크기 등에 따라 다소 조정되어 배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자램프 위치/길이, 형태 보행로 위치/개소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부서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 및 지하 주차장 동 출입구의 출입문, 복도, 경사로, 계단, 난간 등은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인접 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 및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소음,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에 의해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수 있습니다. ● 건축물 내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 될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한전 인입 장비 및 한전 패드, 통신 인입 맨홀이 단지 내에 설치 되므로,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권 침해의 피해가 발생 할수 있고,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측벽에 낙뢰예방을 위한 측뢰 피뢰침이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조경시설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공용시설	●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인근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 (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등)로 인해 조망권 침해 및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기본시설물 및 기본마감재는 제공되나, 내부 집기류 및 이동가구 등은 제외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세부시설의 종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수량과 바닥, 벽체 마감 등은 실제 시공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커뮤니티, 스크린골프, 스터디 룸 등에서 입주 후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일정기간 운영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세 등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각종 홍보물(분양 카달로그, 전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의 내외부 디자인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내부 마감재 재질, 내부 평면구성, 창호계획 및 형태 등은 실시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계약면적 변경이 계약 체결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량 차단기의 위치는 교통동선의 편리성 및 효율성 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현장여건 및 인테리어설계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배치, 마감재, 도어스펙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자전거보관소의 크기, 위치, 개소는 인 · 허가도서 기준으로 시공되고, 본 공사 시 위치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제기를 할수 없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시설(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의 인근에 위치하는 일부 세대는 악취, 해충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입주후 입주민 불편해소(입주관리, 하자접수 및 보수)를 위해 공용공간을 시공사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용설비 및 시스템	● 본 사업장 내 LPG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내 탱크 및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및 필로티의 동파우려부위에는 동파방지열선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에 따른 공용부의 전기료가 발생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보안등,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휀룸D.A, 환기팬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우 · 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동별 ·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지상에 계획된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공사 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함의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고 택배 차량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무인택배 사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 됩니다. ● 옥외 보안등 및 CCTV는 본 공사시 기능과 감시 범위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고 일부 사각 지대가 발생 할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	●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동별 주차배분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할 수 없으며, 각동 출입구까지의 동선 길이가 다릅니다. ●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휀룸D.A, 환기팬D.A 등)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조 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주차장 은 두 개소로 구분되며 진출입구는 개소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두 개소의 지하에서의 연결은 불가하며 입주민의 통행은 부대시설을 통해 가능합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7m로 소형(1톤) 택배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일부구간은 2.3m로 택배차량, 사다리차, 대형차 등의 진입은 불가능합니다. ● 지하 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홀과 연결된 층수 및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하니 계약 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지하주차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동하부 PIT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인허가 도면에 의거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공사중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표지판 및 전기자동차 외 충전구역 주차 시 과태료 부과 안내 표지판 설치됩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랜치는 구배가 없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 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간격이 일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분에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의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수 있습니다. ● 지하층 내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시공 됩니다.
단위세대	평면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높이는 모델하우스 건립세대 기준 거실기준 2,450mm이며, 타입별, 층별로 상이할 수 입습니다. 욕실과 실외기실, 발코니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홍보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현관 및 현관창고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각 세대 창고, 방 또는 기타 내부에 세대 분전반, 세대 통신단자함 등이 개별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가구(붙박이가구, 화장대, 주방가구, 욕실장, 신발장, 욕실거울, 욕조)의 후면 또는 측면, 바닥면, 천장과 접하는 비노출면과 거울 후면을 포함한 비노출면은 별도의 마감(도배, 타일, 마루)을 하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로 마감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변형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이 줄어들지않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내의 일반 조적벽은 옹벽으로 비내력은 조적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및 세대 간 벽체 종류는 분양면적 내에서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시공 시 현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발코니	● 발코니 확장공사는 "공급 분양가 포함"으로 전세대가 확장형으로 일괄 시공하여 공급하오니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향후 발코니 미확장 요구 및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상당금액을 사업주체에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 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샤시의 사양으로 인해 침실부 일부 골조 상단에 물 끊기 홈이 미설치 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부 샤시가 설치된 발코니 외벽에는 단열재 및 마감재가 설치되며 (실외기실은 제외) 설치 부위와 재질은 발코니별, 주택형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게 시공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 · 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외부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 및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되어 미관이 저해될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외부 샤시가 설치되는 벽면 하단 높이가 높아져 외부 샤시의 면적 및 크기가 줄어듭니다.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덕트, 에어컨배관, 스프링클러 배관, 전열교환기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전동형 빨래 건조대의 봉을 펼쳤을 경우 발코니(설치위치 변경가능)의 창호와 간섭이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호	●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 (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방식 및 방향과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루버의 설치 높이와 형태는 설비장비의 성능향상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창호의 크기 및 세부사양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55호) "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면하는 발코니 도어는 결로 및 방화 등의 하자를 고려하여 동등이상의 자재로 변경하여 시공되어질수 있습니다.
	가구 및 마감재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의 벽, 바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제공되는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제품이 동질, 동급,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시공 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 위 래핑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욕실1,2)은 본 공사시 목문틀에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인 · 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수전류 및 각 화장실의 마감자재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도기류는 설치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사용되는 타일류는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타일나누기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주방상판 및 벽체 제품 특성상 색상, 나뭇무늬가 본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알루미늄 여닫이 문은 본 시공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스톤(현관디딤판, 화장대상판, 욕실뒷선반등)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음. 재료의 접합연결부가 발생하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및 세탁실 문턱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음.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시공되며, 제품사양은 동등이상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디자인 및 크기,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강마루 바닥재는 동급 이상의 제조사로 변경될 수 있으며, 우드패턴 및 색상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출입구(발코니 등)의 사양, 크기, 개폐방향 및 손잡이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변형벽체는 이동식이 아닌 건식고정벽체로써, 조적벽이나 콘크리트벽보다 방음효과가 떨어지므로 실별로 다소 소음이 전달될 수 있고, 벽걸이형TV, 선반, 기타중량물을 설치할 경우 입주자의 별도 보강재 설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외벽 및 세대 간 벽 등 단열설치 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견본주택에 배치되는 가구 및 기타 악세서리는 실시공시 좌우타입 세대 배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死)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의 천정의 별도 마감은 없습니다.
	기계설비/전기설비	● 욕실 천장에는 배관 또는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전열교환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를 위한 바닥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에 의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에어컨(거실2대 안방1대)과 별도로 추가 에어컨 설치시는 에어컨 성능에 추후 문제가 없도록 실외기 공간 등을 입주자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 제어시스템 및 온도조절기 등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설계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 등의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별도의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제어 설계에 따른 침실용 온도조절기에 의해 통합제어 됩니다. ●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각 주동 지하층 및 지상층에 설치되므로 사전에 도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환기를 위한 환기장치가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 등에 설치되며, 환기장치 가동에 따라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TV폰 배선이 후면가구에 연결되며 배선 위치가 노출 되어 시공 되며, 설치 위치는 변경 될수 있습니다. ● 부부 욕실2에는 욕실 스피커 폰이 설치 되며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벽걸이 TV 설치시 전선, 케이블등이 노출 될수 있습니다. ● 인덕션, 하이브리드 등 전기 쿡탑 용량은 3kW 기준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며, 입주자가 추후 3kW 이상의 제품으로 별도 설치할 경우 배선 및 배선기구의 변경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의 전원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삼성전자) 에어컨입니다.(거실에 설치되는 기본시스템에어컨은 제습기능이 제외된 제품임) ● 세대내 가스배관은 보일러 가스 배관 외에는 설치 되지 않습니다.
	기타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의 천정 높이 및 바닥 단 깊이 등은 본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방화문은 성능에 따라 형태 및 디자인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가구 디테일 및 이음매의 위치, 도어 나누기 등은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가구 상부장 및 수납의 크기 등은 층별 천장고 차이로 인하여 상이하게 시공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몰딩의 형태는 본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사용된 도배지는 하자방지를 위하여 제조사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102동 옥상) 및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세대는 조망, 소음, 진동,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층 테라스는 세대별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며, 다락 앞 옥상 테라스는 4층세대 전용공간입니다. ● 1층 세대 앞 외부공간은 1층 세대의 전용공간으로 사용됩니다.
견본주택		● 견본주택내의 조명, 디스플레이용 가구 및 장식품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본 공사시 제외됩니다. ● 견본주택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추가 선택품목(유상) 품목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전 마감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카탈로그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으로 확인이 어려운 공용부분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은 준공도서에 따릅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수, 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부 계단 및 엘리베이터 홀,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및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향후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니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 시에는 계약을 체결한 품목 외에 전시품 등은 시공 ·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 유니트, 세대 모형, 주민공동시설, 각종 홍보물 등에 표현(설치)된 가구, 소품, 운동기구,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 조경 및 식재, 차☒보도 선형, 주변 환경, 부지 레벨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 과정 상 경미한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지 주변환경,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갯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 소방시설로서 실제 시공 시 관련 법령에 의거 변경(사양, 개수, 위치) 설치될 예정입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및 시공 범위는 타입별로 차이가 있사오니 반드시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주택형 및 세대별 단지배치, 개인 취향에 따라 마감재변경(색상 등 포함), 위치 변경(거실 위치 등)은 불가하오니 견본주택 및 도면 상 내용 및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 시공(전시)되어 있지 않은 평면에 대해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분양 안내책자 등을 통해 계약 전 세대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구조 및 마감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 시 견본주택 내에 시공(전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의 해지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 추가선택품목 등을 모두 설치한 세대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며, 설치 및 시공내용,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등 전기배선 관련 제품과 월패드, 주방 TV 등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사양 및 온도조절기, 바닥 배수구의 제품사항 및 위치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99Am²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밖의 사항은 모형물과 홍보 제작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모형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외벽의 줄눈 형태 및 칼라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관리형토지신탁 특약사항 (본 내용은 본 공고의 어느 조항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위 분양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휴온인베스트먼트가 교보자산신탁(주)에게 사업부지 및 시행을 신탁하여 진행하는 혼합형토지신탁 사업으로, 실질적인 분양사업자는 (주)휴온인베스트먼트임을 매수인은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보자산신탁(주)는 관련 법률 및 본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제반 의무 (분양대금 반환, 지체상금 배상, 하자보수책임을 포함하여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넘는 책임은 (주)휴온인베스트먼트가 부담합니다.
• (주)휴온인베스트먼트의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매수인에게 위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과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본 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수탁자가 부담하는 제반 권리의무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주)휴온인베스트먼트지위의 승계가 있을 경우 그 승계인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매수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기타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온인베스트먼트, 교보자산신탁(주), 대창기업(주)간에 체결한 혼합형토지신탁계약에 의거 대창기업(주)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교보자산신탁(주)가 본 사업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할 경우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은 최대 6개월 자동 연장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인지하며 동의한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고기밀창호	적용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은 KS F2292(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1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자재		–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대기전력차단장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고효율조명기구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의 사용여부에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실별온도 조절장치		세대 내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제6조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3항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에 해당하는 의무사항으로 해당 내용을 만족함
제6조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의 단열재 설치방법 준수		
제6조4호에 의한 방습층의 설치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자)건축사사무소 태백	㈜제이렉	㈜다온엔지니어링	㈜제이렉
감리금액	₩656,555,900	₩30,000,000	₩20,000,000	₩30,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으며,(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22-101-0004900호	₩48,047,3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구 분	내 용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 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함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 호	교보자산신탁(주)	(주)휴온인베스트먼트	대창기업(주)
주 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A, B동 7, 8층(서초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 599, 2층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80, 301호(안양동, 국토빌딩)
법인등록번호	110111-1617434	220111-0150309	110111-0137665

■ 견본주택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866-1번지
■ 분양홈페이지 : http://www.휴온아델리브.com
■ 분양문의 : 1533-2116

※ 본 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